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45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윤준병·강준현·김윤덕

정동영 • 박희승 • 이춘석

신영대 · 한병도 · 박용갑

박홍배·조계원·허 영

위성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

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5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제10호"를 "제3항제10호"로 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38조제2항 및 제6항"을 "제38조제3항 및 제7항" 으로 한다.

제71조제7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제38조제2항</u> 에 따라 예비타	15. <u>제38조제3항</u>
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
	하여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
	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
	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u> 여야 한다.</u>
② ~ ④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
<u>0호</u>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
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
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
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⑥ (생략)

-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 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

<u>⑥</u> <u>제3항제1</u>
<u>0\$</u>
<u>.</u>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38조제3
항 및 제7항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부서류)
1 ~ 1 11 /

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 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u>제38조제2항</u>(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u>.</u>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8조제3항</u>